

#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김태훈 의원의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불 임 참 조
4. 검 토 의 견 : 불 임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22일 김태훈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4조, 제17조,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농수축산물(이하 “생산물”이라 한다)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유통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 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 주요내용

가. 유통 생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품위생법」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및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생산물을 유통 중지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다. 정밀검사 결과 에 따라 "부적합" 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기처분에 관한 조치를 하고, 제4조에 의한 유통중지 후 정밀검사 결과 "적합" 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지체 없이 유통 중지를 해지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

라. 유통이 중지된 생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마.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바. 시장은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농수축산물검사소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함(안 제7조)

사.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과다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 3.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유통되는 농·수·축산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 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주요제정 내용은

-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 제3조는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4조와 제5조 에서는 정밀검사 시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생산물을 유통 중지하게 할 수 있으며, 유통 중지된 생산물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생산물은 폐기조치, “적합”판정 생산물은 유통 중지를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제6조는 유통 중지 생산물의 “적합”판정시 손실보상관련 청구 절차,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와 “부적합”판정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7조는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8조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물 제공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조속한 시행과 검사업무의 정착을 위하여 인력의 조기확보, 검사장비 구입비 등 관련 예산 확보,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소 차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